
2019년도 지방출자·출연기관 예산편성 보완지침

2019. 1.



행정안전부
[공기업지원과]

< 목 차 >

1. 보완지침 수립 개요 1

- 추진경위
- 주요 보완(개선)내용
- 지침의 성격 및 적용

2. 2019년도 지방출자·출연기관 예산편성 보완지침 2

- 2019년도 지방출자·출연기관 예산편성보완지침(전문)
-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 특례조항 신설
-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산정방식 개선
- 퇴직자, 퇴직자단체 등에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지원 금지 신설
- 접대비 세법상 손금인정 한도 관련 규정 변경사항 반영

3. 행정 사항 8

□ 추진 경위

- 2019년도 지방출자·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시달 : 2018. 6. 30.

□ 주요 보완(개선)내용

- 지방출자·출연기관의 총인건비 편성기준 마련
 - '19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'18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1.8%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
 - * 단, 유사 동종기관과의 현격한 인건비 격차(1인당 평균임금의 80% 미만)가 있는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인상률을 달리할 수 있음
 - '육아휴직 대행업무수당' 및 '직무발명 보상금'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 특례 신설
- 예산편성지침 관련 제도·정책 변경사항 등 보완
 -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'퇴직자, 퇴직자단체 등에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지원 금지' 신설
 -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산정방식 개선(월할→일할)
 - 접대비 세법상 손금인정한도 규정 변경(조세특례법→법인세법)사항 반영

□ 지침의 성격 및 적용

- 본 지침은 기 시달('18.6.30)된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일부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(지방출자출연법 제27조)
- 시·도 및 시·군·구에서는 지방출자출연기관에 예산편성보완지침에 관한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통보(동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)
- 지방출자·출연기관은 인건비 등 예산편성보완지침에 대해 적극적인 노사 간 협의를 통하여 본 지침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반영

□ 2019년도 지방출자·출연기관 예산편성보완지침

○ 2019년 총인건비 관련 개선내용

- '육아휴직 대행업무수당' 및 '직무발명 보상금' 총인건비 인상을 제외 특례 신설

○ 2019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관련 개선내용

-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산정방식 개선(월할→일할)
- '퇴직자, 퇴직자단체 등에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지원 금지' 신설
- 접대비 세법상 손금인정한도 규정 변경(조세특례법→법인세법) 반영

< 총인건비 관련 전문 >

- 총인건비는 모든 인건비와 인건비 항목 외에 계정과목 및 명목여하에 불구하고, 임직원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하되, 다음 사항은 총인건비 인상을 산정시 제외한다.

- 기관장 및 정원의 직원(비정규직) 인건비, 퇴직급여충당금, 의사직 운영기관의 진료성과급, 경영실적평가 및 직무수행실적 성과급, 연구수당(과제수행에 따른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·장려금)
- 가족수당(배우자, 자녀 및 직계존속 부양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), 영유아보육비(「영유아보육법」 제14조에 의해 지급되는 지원금), 자녀학비 보조수당(「초중등교육법」상 학교에 취학중인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금)
- 4대보험* 사업자 부담분,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따른 추가인건비(급식비, 교통비 등)

* 4대보험: 고용보험, 산업재해보상보험, 국민건강보험(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), 국민연금

- 「지방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안」(15.9.30) 및 「지방출자·출연기관 임금피크제 운영지침」(16.5.12)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17조에 따라 지원받는 지원금(상생고용지원금),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마련한 절감재원 중 신규자 인건비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

-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에 대한 「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(‘17.7.20)」 상의 처우개선 소요액(급식비 월13만원, 복지포인트 연40만원, 명절상여금 연80만원) 및 정규직 전환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, 최저임금 인상*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, 지방출자·출연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시범도입지침(‘18.3.23.)에 따른 별도정원에 소요되는 인건비

*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직전년도 대비 당해년도 최저임금의 증가분

- 육아휴직대행업무수당,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 배분 보상금(직무발명 보상금)

○ 2019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18년말 정원을 기준으로 총인건비 편성한다.

-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정원은 결원율((정원수-현원수)/정원수, 정원수 산정시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별도정원은 제외) 5%를 초과할 수 없으나, 채용계획이 기 확정되었거나 채용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포함 가능

○ 2019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18년도 총인건비 예산 대비 1.8% 인상률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인상률을 적용하여 편성한다.

- 다만, 유사 동종 기관*과의 현격한 인건비 격차(1인당 평균임금**의 80%미만)가 있는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인상률을 달리 할 수 있다.

* 유사동종의 정의는 지방출자출연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출자·출연기관의 동일 업종 또는 유사업종을 말함

** ‘1인당 평균임금’이란 정규직의 총인건비 집행액을 연간 근무인원(무급 휴직자 등을 제외하고 일할 계산한 인원)으로 나누어 산출된 금액

-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기존 사업비,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등에 포함되었던 해당 비정규직 인건비를 전환하여 편성하고 그 금액만큼 기존 사업비 등에서 감액하여 계상한다.

-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동일·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정규직과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, 과도한 국민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한다.

- 정규직 전환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「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」 상의 처우개선 소요액(급식비 월13만원, 복지포인트 연40만원, 명절상여금 연 80만원)을 편성할 수 있다.
- 승진, 승급, 채용 등에 따른 추가 인건비 소요분은 총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하되, 다음 사항은 예비비로 편성하고, 편성된 예산을 편법적인 인건비 인상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한다.
 -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해당되는 인건비와 지도·감독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친 정원 증원에 해당하는 소요 인건비
 - 연도 중 퇴직, 병가, 장기교육, 출산휴직 등 6개월 이상 장기간 결원인원의 업무공백에 대체하여 투입되는 대체인력 인건비
 -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17조에 따라 지원받는 지원금(상생고용지원금)
 - 지방출자·출연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시범도입지침("18.3.23.)에 따라 별도정원으로 승인 또는 협의된 청년근로자의 인건비
-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 소요는 2018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1.4% 한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에 별도 편성할 수 있다.
 - ※ 연봉제 직원은 호봉제직원의 평균 호봉승급 소요인건비로 산정하고, 전 직원이 완전한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관할 시·도지역내 평균호봉승급분 인상률을 감안하여 1.4%이내에서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
- 총인건비 인상률을 위반한 기관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여 패널티를 적용하고, 다음연도 인건비 예산편성시 인상률 위반 금액만큼 감액하여 편성한다.
- 2018년까지 임금피크제 도입(임금피크제 도입제외 승인을 받은 기관은 제외)을 완료하지 못한 기관은 2019년도 총인건비 예산을 2018년도 총인건비 예산 이내에서 편성한다.
- 기관장의 연봉액은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,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상향 또는 삭감 가능

1 총인건비 인상을 산정시 제외특례조항 신설

- 지방공기업 총인건비 제도와 형평성 차원에서 '육아휴직 대행업무수당'
-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 배분 보상금(직무발명 보상금)

2019년도 예산편성지침	2019년도 예산편성보완지침				
<p data-bbox="169 622 261 658"><p18></p> <p data-bbox="169 678 531 719">Ⅲ 주요 항목별 편성기준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77 734 775 792"> <tr> <td data-bbox="177 734 256 792">1</td> <td data-bbox="256 734 775 792">인건비</td> </tr> </table> <p data-bbox="185 813 384 853">(1) 총인건비</p> <ul data-bbox="201 871 775 1160"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총인건비는 모든 인건비와 인건비 항목 외에 계정과목 및 명목여하에 불구하고, 임직원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하되, 다음 사항은 총인건비 인상을 산정시 제외한다. <p data-bbox="212 1178 325 1218">- (신설)</p>	1	인건비	<p data-bbox="798 622 890 658"><p18></p> <p data-bbox="798 678 1160 719">Ⅲ 주요 항목별 편성기준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805 734 1406 792"> <tr> <td data-bbox="805 734 885 792">1</td> <td data-bbox="885 734 1406 792">인건비</td> </tr> </table> <p data-bbox="813 813 1013 853">(1) 총인건비</p> <ul data-bbox="829 871 959 911"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좌동) <p data-bbox="841 1126 1406 1317">- <u>육아휴직대행업무수당,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 배분 보상금(직무발명 보상금)</u></p>	1	인건비
1	인건비				
1	인건비				

②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산정방식 개선

○ 지방공기업의 성과급 산정방식으로 개선(월할→일할)

2019년도 예산편성지침	2019년도 예산편성보완지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<p31> III 주요 항목별 편성기준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10px;"> 3 성과급 제도 </div> <p>(1)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지급액) 연봉(보수)월액×지급율 <p>※ 총액산정 시 일할 계산 대상자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된 금액을 반영</p> <p>예시) 연말까지 근무한 경우의 입(퇴)사자 및 복직자의 월할 계산 방법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입사 일자</td> <td>01/02 02/01</td> <td>02/02 03/01</td> <td>03/02 04/01</td> <td>04/02 05/01</td> <td>05/02 06/01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월수</td> <td>11월</td> <td>10월</td> <td>9월</td> <td>8월</td> <td>7월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06/02~ 07/01</td> <td>07/02 08/01</td> <td>08/02 09/01</td> <td>09/02 10/01</td> <td>10/02 11/01</td> <td>11/02 12/01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6월</td> <td>5월</td> <td>4월</td> <td>3월</td> <td>2월</td> <td>1월</td> </tr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도중 입(퇴)사자 및 복(휴)직자의 경우에는 력에 의하여 계산한다. · 2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 휴직한 경우 2월 휴직으로 처리 · 2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 휴직한 경우 1월 휴직으로 처리 	입사 일자	01/02 02/01	02/02 03/01	03/02 04/01	04/02 05/01	05/02 06/01	월수	11월	10월	9월	8월	7월	06/02~ 07/01	07/02 08/01	08/02 09/01	09/02 10/01	10/02 11/01	11/02 12/01	6월	5월	4월	3월	2월	1월	<p><p31> III 주요 항목별 편성기준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10px;"> 3 성과급 제도 </div> <p>(1)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지급액) 연봉(보수)월액×지급율 <p>※ 총액산정 시 일할 계산 대상자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된 금액을 반영</p> <p style="color: red;">예시) 이하 삭제</p> <p style="color: red;">예시) 연말까지 근무한 경우의 입(퇴)사자 및 복직자의 월할 계산 방법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입사 일자</td> <td>01/02 02/01</td> <td>02/02 03/01</td> <td>03/02 04/01</td> <td>04/02 05/01</td> <td>05/02 06/01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월수</td> <td>11월</td> <td>10월</td> <td>9월</td> <td>8월</td> <td>7월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06/02 07/01</td> <td>07/02 08/01</td> <td>08/02 09/01</td> <td>09/02 10/01</td> <td>10/02 11/01</td> <td>11/02 12/01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6월</td> <td>5월</td> <td>4월</td> <td>3월</td> <td>2월</td> <td>1월</td> </tr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도중 입(퇴)사자 및 복(휴)직자의 경우에는 력에 의하여 계산한다. · 2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 휴직한 경우 2월 휴직으로 처리 · 2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 휴직한 경우 1월 휴직으로 처리 	입사 일자	01/02 02/01	02/02 03/01	03/02 04/01	04/02 05/01	05/02 06/01	월수	11월	10월	9월	8월	7월	06/02 07/01	07/02 08/01	08/02 09/01	09/02 10/01	10/02 11/01	11/02 12/01	6월	5월	4월	3월	2월	1월
입사 일자	01/02 02/01	02/02 03/01	03/02 04/01	04/02 05/01	05/02 06/0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월수	11월	10월	9월	8월	7월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06/02~ 07/01	07/02 08/01	08/02 09/01	09/02 10/01	10/02 11/01	11/02 12/0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월	5월	4월	3월	2월	1월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입사 일자	01/02 02/01	02/02 03/01	03/02 04/01	04/02 05/01	05/02 06/0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월수	11월	10월	9월	8월	7월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06/02 07/01	07/02 08/01	08/02 09/01	09/02 10/01	10/02 11/01	11/02 12/0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월	5월	4월	3월	2월	1월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3 퇴직자, 퇴직자단체 등에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지원 금지

<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> 제도개선총괄과-2792(2018.1.2.)

- '공공기관의 퇴직자단체 등과 특혜성 계약관행 개선방안' 제도개선 권고
 - 행정안전부 '공기업·준정부기관 예산편성 기준' 및 '지방 출자·출연 기관 예산편성 지침'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에 금지사항 항목 추가

< 신 · 구 대비표 >

2019년도 예산편성지침	2019년도 예산편성보완지침				
<p><p36> III 주요 항목별 편성기준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r> <td style="background-color: #002060; color: white; text-align: center;">6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기타</td> </tr> </table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(신설)</p>	6	기타	<p><p38> IV.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r> <td style="background-color: #002060; color: white; text-align: center;">8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기타</td> </tr> </table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<u>퇴직자, 퇴직자단체 등에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지원을 금지</u></p> <p>○ <u>업무와 관련이 없는 퇴직자, 퇴직자를 임원으로 고용한 기업, 퇴직자모임·단체 또는 그 퇴직자모임·단체의 회원사 또는 자회사 등에 사무실 무상임대, 행사비 지원 등 법적 근거 없는 예산 지원을 금지</u></p>	8	기타
6	기타				
8	기타				

4] **접대비 세법상 손금인정 한도 관련 규정 변경사항 반영**

- (당초) 조세제한특별법시행령 제136조(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)
 - '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2천400만원에 해당 사업 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.('19.1.1. 폐지)
- (변경) 법인세법 제25조(접대비의 손금불산입) 2018.12.24.(신설)

< 신 · 구 대비표 >

2019년도 예산편성지침		2019년도 예산편성보완지침	
<p><p60> 붙임 2. 예산과목 및 과목해소</p>		<p><p60> 붙임 2. 예산과목 및 과목해소</p>	
2 세출예산과목 및 과목해소		2 세출예산과목 및 과목해소	
예산과목	과목해소	예산과목	과목해소
업무추진비 214	1. <u>조세제한특별법시행령 제136조</u> 에서 정한 손금인정한도 내에서 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한 제경비 계상(기준액 초과금지) 2. 부서별 또는 업무단위별로 계상하되, 개인에게 월정액 지급은 불가 3. 집행방법은 공통기준 참조	업무추진비 214	1. <u>법인세법 제25조</u> 에서 정한 손금인정한도내에서 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한 제경비 계상(기준액 초과금지) 2. ~3.(좌동)

3 **행정 사항**

- (사·도) 관할 시·군·구에 대하여 예산편성보완지침 이첩 통보 : 즉시
- (설립 자치단체) 각 자치단체별 산하 출자·출연기관에 대해 예산 편성보완 세부지침(총인건비 인상률 확정) 수립 통보 : 2019년 2월 한
- (출자·출연기관) 설립 자치단체에서 통보된 총인건비 인상률 범위 에서 **2019년도**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인건비 집행에 반영 : 2019년 3월 한